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56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30. [redacted]시 [redacted]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다)를 47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인 4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 1%를 곱한 취득세 4,750,000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1%의 50/1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3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0%를 곱한 지방교육세 475,00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취득가액 475,000,000원에 표준세율 2/100을 곱한 9,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곱한 농어촌특별세 950,00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에서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	제112조(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table>
<tr><td></td><td>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td><td>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td><td>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td></tr>
<tr><td></td><td>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td><td></td><td></td></tr>
<tr><td>지방교육세</td><td>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table><tr><th>구분</th><th>과세표준</th><th>표준세율</th></tr><tr><td>1</td><td>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td><td>100분의 20</td></tr></table></td><td>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td><td>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td></tr>
</tabl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table>
<tr><td></td><td></td><td></td><td>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td></tr>
<tr><td rowspan="3">농어촌특별세</td><td colspan="2">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td><td>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것)</td></tr>
<tr><td colspan="2">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d>좌동</td></tr>
<tr><td>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6</td><td>「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td><td>100분의 10</td></tr>
</table></td><td>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table>
<tr><th>호별</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6</td><td>「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td><td>100분의 10</td></tr>
</table></td></tr>
</table>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법률 제10361호)'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부과하면서 그 표준세율을 각 20/1,000으로 정하였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고 있었는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취득세만 부과하면서(이하 '현행 취득세'라 한다) 그 표준세율이 종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합산한 40/1,000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지방세법(법률 제10361호)상 취득세(이하 '종전 취득세'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개정된 점, ② 그런데 정부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13. 12. 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10/1,000으로 정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본세로 한 부가세인 점, ③ 구 지방세법(법률 제10361호)상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같은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세율(10/1,000)에 따라 계산된 현행 취득세 중 종전 취득세의 비율인 1/2에 상응하는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현행 취득세 중 종전 취득세에 상응하는 1/2 부분에 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의도였다면, 그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는 2010. 12. 30.자 개정을 전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취득세라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도 그 과세표준을 종전 취득세 부분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같은 법 제2조에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같은 법 제3조에서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위 제4조의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19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창구

판사 최윤영